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6
----------	-----

2022년 12월 2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2월 20일, 김길영 의원(찬성자 : 19명)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9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길영 의원)

가. 제안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21.9.14.)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대상이 현행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총공사비 100억원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된 바,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1.9.14.시행)되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 중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안 검토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①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 ----- ----- -----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제3조제1항제5호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현행의 “영 제17조 제2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¹⁾, 특정공사²⁾,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³⁾,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⁴⁾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 이는 2021.9.14.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붙임1) 참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심의위원회로 위임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대상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시·군·구의 경우에는 50억원)로 확대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서울시는 영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채 그동안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대상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적용(〔표〕 참조)해 온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이처럼 조례와 시행이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정의) ① (생략)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정의) (생략)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표] 공기적정성 심의 신설 이후 심의 내역

(‘22. 12. 16. 기준)

구분	연도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합계
상위법 반영 후	2022년	4	-	3	5	12건
상위법 반영 전	2021년	2	1	1	-	4건
	2020년	6	1	1	-	8건
	2019년	-	-	3	-	3건

[붙임]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조 개정사항

[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조 개정사항(21.9.14. 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p>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생략)</p> <p>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2. (생략)</p> <p><u>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u></p> <p><u>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u></p> <p><u>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u></p> <p>4. ~ 6. (생략)</p> <p>③ ~ ⑩ (생략)</p>	<p>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u>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u></p> <p>4.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6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4일
발 의 자: 김길영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경훈, 김용일,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남창진, 박철성,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유정인, 이민석,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채수지, 최민규, 황철규 의원(19명)

1. 제안이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21.9.14.)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대상이 현행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된 바,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5. <u>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u></p> <p>6. ~ 11. (생략)</p> <p>②·③ (생략)</p>	<p>제3조(기능)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u> ----- ----- ----- -----</p> <p>6. ~ 11.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